

온천관광지 개발실태 조사연구

김 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Korean Hot Springs

Kim Hyun

Korea Culture & Tourism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Hot springs development will be more activated with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than before. Nevertheless, investment and development achievement of hot springs has not resulted in a successful performance to foster townships, and this calls upon locals to build a guideline to develop hot spring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laws on hot springs, which influence mostly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 to gather up the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development, and to suggest conside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plans. Features of the hot spring development are as follows: One is that metropolitan cities will discover hot spring resources more than small cit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be twofold : one for resort tour and the other for one-day rest and recreation. In addition, Korean laws on hot springs are more site development-oriented to support tourism and recreation than to protect environment and discover unused resources. This makes hot spring development easier and efficient being supported by hot spring law, law on territory development and use, and tourism promotion law. On the other side, planned landscape trimming can be uniformized and unharmonized in terms of local ident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This is why careful considerations such as goods and bads of the local resources, local history and culture are needed in hot spring development. A long-term development project should include remodeling based on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trends. The third point indicates that Korean hot springs development has recorded relatively low performance due to difficult private capital attraction, and a high fence on land purchase and development approval. It is essential to release restrictions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especially on those whose development performance has not been successful so that best practice can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remodeling and marketing. New plans on hot spring development should be also examined based on developer's capacity and local authorities' volition on the plan. Last point shows that most hot springs development plans have been designed only based on territory utilizing plan and facilities arrangement, not considering much on fund-raising, operational plan or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tourism promotion law should reinforce guidelines on tourist site approval system by supplemen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 on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s necessary to deepen developers' understanding, since most developers are experts more on city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ing, constructing and engineering than tourism development.

Key words : Hot springs, Development status, hot spring law, Tourism sites, Pla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총 국내관광 일수는 1999년의

7.58일, 2001년의 8.73일, 2004년의 9.26일, 2005년 9.94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한국관광공사, 2006), 주 5일제의 확대 시행으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의 활용이 보다 쉬워지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국민적 관광지향에 따라 관광지 개발·정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노인층의 관광참여 확대, 건강과

Corresponding author : Kim Hyun
Tel : 02-2669-6942
E-mail : hyun@kcti.re.kr

관련된 관광활동의 증가 등의 변화가 전망됨(문화관광부, 2003)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관광지 중 하나가 「온천관광지」이다. 특히, 온천관광지는 전체 관광지 중 수변형, 산악형에 이어 다수 개발되는 자원유형(문화관광부, 2005)으로 우리나라 관광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천관광지는 조성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확보의 어려움, 투자재원 조달의 미흡,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미진하여 국민의 관광·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장소로서의 만족도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지정권한이 시·도에 이양된 이후에는 관광지 개발실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문화관광부, 2005), 온천지 개발의 근거법인 온천법에 대한 관광개발 차원의 분석이 전무하여, 온천관광지 지정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렵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온천지 개발 현황 및 개발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개별 또는 일부 온천지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권순조, 1992; 김동균, 1992; 김한주, 1995; 김충기, 1995; 현훈, 1993; 김현, 1996; 김재근, 1998; 류홍선, 2001; 나병조, 2004), 관광진흥법에 의한 온천관광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온천법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또한 온천 개발 절차 및 성분, 온도 등의 자원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관광개발적 접근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전체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개발규모, 조성단계, 도입시설, 투자실적 등의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온천관광지 지정 및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일본의 온천법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온천법의 개발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온천관광지의 개발실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온천지 개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천지 지정 및 조성 현황고하 온천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온천관광지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2005년 12월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40개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단계의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05년 12월 현재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349개소의 온천원보호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현황 및 개발면적, 온천이용시설,

온천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개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온천의 전반적인 개발추세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349개소의 온천원보호지구 중 2005년 12월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관광지 지정이 이루어진 40개 온천관광지에 대하여 개발규모, 개발유형, 개발단계, 도입시설, 투자실적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온천관광지의 개발 현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의 관련 내부자료,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3,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의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투자실적과 도입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의 관광개발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 온천개발의 근거법인 온천법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온천법은 일본의 온천법을 근간으로 작성되어 초기에는 거의 비슷한 체제 및 내용을 담았으나 한국의 사회적, 정책적 개발 니즈에 따라 현재의 온천법으로 개정되었다(서수원, 2003). 이에 한일간의 비교를 통한 상이점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온천법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온천 개발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온천법(2006년)과 일본의 온천법(2005년)을 대상으로 온천법의 구성 및 주요 항목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추출된 상이점을 중심으로 II장의 조사·분석결과 및 역사적 배경 고찰 등을 실시하였다.

II. 온천관광지 지정 및 조성 현황 분석

1.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조성 현황

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현황

시·도별 공중위생법 등의 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었던 온천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981년 온천법이 제정되면서 부곡, 백암 등 15개소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굴착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온천지구는 온천수 채취가 용이한 한국중서부, 남동부 및 동해안 등 온천수 채취에 적합한 지역에 집중·분포하였다. 이에 반해 2005년 현재 온천원보호지구¹⁾ 및 온천원 보호구역²⁾(이하 온천원보호지구)은 경북

1)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온천부존지역)을 기준으로 지정된다(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하며(단, 시장, 군수 허가

표 1. 온천원보호지구의 개발 현황

구분	계 (개소)	신고수리 (개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원보호구역 지정현황						개발계획수립지구 (개소)	연간이용인원 (천명)	지정면적 (㎡)
			온천원보호지구(개소)			온천원보호구역(개소)					
			계	이용중	개발중	계	이용중	개발중			
계	349	109	135	67	68	105	77	28	63	52,251	189,129

60개소, 경기 33개소, 경남 24개소, 강원 21개소 순으로, 총 349개소가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는 굴착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교통의 혼잡 등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의 부담으로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관광을 즐기려는 관광형태 변화³⁾ 및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의 일환으로 온천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천지로서의 역사적 배경이 전무하고 80년대 이후 굴착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천지 개발을 착수한 서울, 광주, 울산, 전남의 모든 온천공(97개소)과 인천, 경기, 전북의 9개 온천공을 제외한 174개소의 온천공 온도가 모두 35℃미만의 중온이었으며, 이 중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전북의 모든 온천공의 심도는 500m이상의 깊은 심도로 무리하게 굴착·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온천개발이 부존자원에 근거한 개발이 아닌 수요 및 개발의지에 의하여 무리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국적 확산과 함께 온천법 제정당시 온천지가 전무하였던 수도권에 41개소의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는 등 온천지 개발이 급증하였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이 완화된 수도권지역은 전 인구의 약 50%에 상당하는 인구밀집지역이자 소득 및 소비성향이 타권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이며, 특히 경기도는 제1의 국내당일여행목적지로서 개발수요가 충분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수도권에서의 온천지 개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온천원보호지구의 조성 현황

2005년 현재 행정자치부에 온천지로 등록된 총 349개소의 온천지 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240개소(69%)이며, 이 중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 온천지는 63개소에 불과하여 행정절차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개 온천원보호지구의 총 면적은 189,129㎡로 1개소당 평균면적은 1,400㎡인데 비해 실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63개 지구의 1개소당 평균 개발계획면적은 598㎡로 약 57%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또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온천지가 63개소에 불과한 것에 비해 현재 온천이용시설이 1개소 이상 조성된 온천지는 약 2배에 해당하는 147개소로 대부분의 온천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등 온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개발·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온천개발계획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240개소 중 온천이용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이용 중인 온천지가 147개소(61%)에 불과하며 이용시설이 전무한 지역이 93개소에 이르는 등 개발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온천관광지 개발 현황

총 온천원보호지구 중 관광지로 지정된 온천관광지는 약 17%에 해당하는 40개소로 조사되었다. 온천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후, 온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관광지제도는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허용시설 등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 사용시 가능/ 온천법 제15조, 원칙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내만 온천수 공급, 이용이 가능하다. 온천법시행령 제10조2항에 예외조항이 있으나, 예외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보호와 이요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겠다.

2)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4만㎡이내의 소규모 개발(온천법시행령 제4조)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되며(온천법 제5조),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공 보호, 이용 방침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 제한이 적용된다.

3) 2005년 국내숙박여행 방문지의 경우, 강원(43.0%), 서울(26.5%), 경기(26.5%), 인천(21.9%) 지역 거주자가 '강원' 지역을, 경남(46.9%), 부산(40.9%) 및 울산(29.7%) 지역 거주자들은 '경남' 지역을, 대구(39.6%) 및 경북(37.6%) 지역 거주자들은 '경북'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국내당일여행의 방문지로 서울(57.5%), 경기(43.7%), 인천(30.7%) 지역 거주자들은 '경기' 지역을, 경남(68.7%) 및 부산(37.6%) 지역 거주자들은 '경남' 지역을, 광주(81.2%) 및 전남(65.4%) 지역 거주자들은 '전남' 지역을, 경북(54.1%) 및 대구(45.3%) 지역 거주자들은 '경북' 지역을, 충남(44.0%) 및 대전(39.9%) 지역 거주자들은 '충남'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06). 즉, 거주하고 있는 시/도 지역 또는 인접 지역으로 당일 및 숙박여행을 다녀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한국온천관광지 개발 현황

시도	온천 관광지명	관광지 지정일자	관광지 승인일자	사업기간	사업추진방식	면적(km ²)			온천이용 시설(개소)	조성단계
						온천지구 지정면적	온천개발 계획면적	관광지개발 계획면적		
합계	40개소					62.731	18.182		149	
강원 (5)	홍천	96. 9.10	97. 8.23	1996.09~2014	공공+민간	0.952	0.371	0.371	2	추진
	영월	96. 7.18	99. 4.22	2001~2006	공공+민간	1.256	0.574	0.574	-	추진
	강릉	99.10.27	00. 6.20	2000.~2011.12	공공+민간	1.504	0.109	0.109	-	추진
	석교	05. 7. 13	-	-	-	-	-	(0.031)	-	미승인
	화천	97. 9.27	00.10.18	1997~2011	공공+민간	2.836	-	0.763	1	미착공
충북 (4)	충은	89.12.14	90. 6.22	1993~1999	민간	0.291	0.291	0.291	1	개발중단
	능암	89.12.14	90. 6.22	1989~2010	민간	0.235	0.199	0.199	1	개발중단
	돈산	95. 7.28	96. 5. 6	1996.05~2007.12	민간	1.132	0.847	0.877	1	개발중단
	제천	02. 1.16	-	-	-	1.772	-	(0.297)	-	미승인
충남 (5)	덕산	87. 6. 3	87.11.24	1992.11~2000.10	공공+민간	3.091	-	0.724	11	추진
	아산	91. 3.15	91.12.26	1992~2005	민간	1.210	1.210	0.844	30	추진
	칠갑산도립	95.10. 5	96. 1. 6	1996.06~2008.12	공공+민간	0.534	0.130	0.130	-	미착공
	천안	96. 7.29	97. 7.12	1997.07~2006.12	민간	0.952	0.748	0.748	-	추진
전북 (7)	마곡	96. 6.16	98. 6. 1	1999.12~2006.12	공공+민간	0.810	0.071	0.622	1	추진
	마이산회봉	93.12.31	95. 9. 6	1993.9~2009.12		-	-	0.763	-	추진
	석정	92. 2.21	93. 1. 7	1992.02~2009.12	공공+민간	2.970	1.534	1.534	3	추진
	김제	97. 1.20	98. 5.27	1998~2007	공공+민간	2.383	-	0.533	1	개발중단
	상송	97. 2.3	99. 1. 8	2003.08~2007.12	공공+민간	1.091	0.622	0.622	-	개발중단
	죽림	94. 6.15	-	-	-	2.931	-	(1.484)	3	미승인
	약수	99. 7.10	01. 3.20	1992~2011.12	민간	1.008	-	0.202	-	사업미착공
전남 (4)	정읍목욕리	99.11.10	-	-	-	1.781	-	(0.820)	-	미승인
	화순	84. 9.24	84.12.18	1993.10~2008.12	공공+민간	0.426	0.340	0.512	4	완료
	지리산	89.10.24	90. 3.10	1992.06~2011.12	공공+민간	1.836	1.836	1.836	16	추진
	도곡	89.10.27	90. 7.31	2000.07~2007.12	공공+민간	0.843	0.575	0.613	15	완료
경북 (10)	월출산	97.10.13	-	-	-	0.479	0.096	(0.478)	2	미승인
	백암	79.12.31	80. 3.17	1997~2015	공공+민간	0.176	0.176	0.157	10	추진
	문장대	87.11.27	89. 7.14	1987~2010	민간	5.303	1.568	0.956	-	추진
	경산	87.12.10	88. 6.13	1989.04~2011.12	공공+민간	0.262	0.262	0.400	1	추진
	청도	89. 6. 3	90. 11.2	1997.12~2008.12	공공+민간	0.501	0.473	0.473	1	추진
	도산	95. 2.27	98. 4.27	2001.01~2010.12	공공+민간	2.565	1.157	1.157	1	추진
	문경	98. 1.26	98. 3. 7	1998.03~2012.12	공공+민간	2.905	0.400	0.400	3	추진
	탑산	97.12.31	98. 5.29	1998~2013	공공+민간	0.851	0.298	0.136	2	추진
	용암	96.10.21	01.11. 7	1997.12~2008.12	공공+민간	1.897	0.703	0.933	1	추진
경남 (4)	예천	00.3.20	04.11.19	1999~2015	공공+민간	1.925	0.222	0.222	1	추진
	풍기*	00.6.22	01. 6. 4	2006.10~2008.12	공공+민간	1.222	0.097	0.097	1	추진
	부곡	77.6.29	86. 1.29	1986.01~1997.12	공공+민간	4.820	-	0.849	28	완료
	마금산	86. 1.23	87.10.28	1988.11~2003.08	민간	0.152	0.152	0.528	8	추진
제주 (1)	곡안	95. 8. 7	-	-	-	0.986	-	(0.495)	-	미승인
	옥수	01. 7.12	-	-	-	2.912	-	(0.260)	-	미승인
제주 (1)	세화·송당	01.10.31	01.10.31	2003.02~2010	민간	2.363	2.363	2.363	-	개발중단

주. 문화관광부 내부자료(2007), 문화관광부 연차보고서(2006),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보고서(2007) 및 일부 현장조사를 근간으로 연구자 재작성

의 측면에서 시설개발이 용이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주체가 가장 선호하는 토지개발 수단이다.

온천관광지의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온천관광지의 개발 규모, 유형, 단계 및 주요도입시설, 투자 실적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규모

온천관광지의 총 지정 면적은 25.265km²이며 1개소 당 평균면적은 0.63km²로 우리나라 지정관광지 1개소당 평균면적인 0.678km²와 거의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온천관광지당 면적은 세화·송당온천이 2.363km², 지리산온천 1.836km², 석정온천 1.534km²인 반면 석교온천과 풍기온천의 경우에는 0.031km², 0.097km²로 조사되어 개별 온천관광지의 면적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2003년 실시한 관광지 실태조사에서 현 관광지 지정면적이 과대하다고 지적된 점과 온천관광지가 온천수라는 자원의 한계성을 가지는 개발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온천관광지의 경우 과대한 규모로 개발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나. 개발유형

우리나라 지정관광지의 약 80%는 관광 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오수처리 시설, 관리사무소 등 기반시설 및 야영장, 운동장 등과 같은 편의시설은 공공재원으로 개발하고 숙박시설, 이용

편의시설 등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공공주도형은 20개소로 약 11%, 민간주도형은 16개소인 약 9%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온천관광지의 경우에는 공공주도형 개발유형이 전무하였으며 민관협력방식이 31개소(77%), 민간주도형이 아산, 세화송당 등의 9개소(23%)로 조사되었다. 민간주도로 개발되는 16개 지정관광지 중 56%가 온천관광지인 것으로 나타나, 민간에 의한 개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개발단계

40개소의 온천관광지 중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된 곳은 33개소(83%)로, 전체 지정관광지의 조성계획 승인 완료율 88%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조성계획이 미승인된 온천관광지 7개소를 비롯하여 조성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온천관광지가 화천, 약수 등의 2개소, 사업추진 중 개발이 중단된 온천관광지가 둔산, 능암 등의 6개소(15%)로 총 15개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미착수 또는 개발중단 등의 개발부진 원인으로는 사업자간의 갈등과 민간개발업자의 부도 등의 민간사업자 역량부족 및 민자유치 저조(7개소), 지가상승 등에 따른 부지미확보(5개소), 수요예측과 관광시장분석의 미흡 및 온천관광지로서의 특화성 부족 등의 계획의 타당성 미흡(2개소)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주민과의 협의 부족과 관광지지정에서 승인까지 7년 이상 연기 되는 등의 개발의 지 부족 등도 각각 1개소에서 추출되었다.

표 3. 개발부진 온천관광지의 개발제한요인

사.군	관광지명	단계	개발방식	개발제한요인	내용
강원	화천	미착수	-	-부지확보 미흡 -민자유치 저조	-민간사업자 없음
충남	능암	개발중단	민간	-부지확보 미흡 -민자유치 저조	-지가상승으로 투기지역으로 변모 -민간사업자 없음
	둔산	개발중단	민간	-부지확보 미흡 -민자유치 저조	-지가상승으로 투기지역으로 변모 -민간사업자 없음
	충은	개발중단	민간	-부지확보 미흡 -민자유치 저조	-지가상승으로 투기지역으로 변모 -민간사업자 없음
전북	약수	미착수	-	-계획의 타당성 미흡 -지역연계체계 부족	-수요예측과 관광시장분석 미흡, 온천관광지로서의 특화성 부족 -지역주민과의 협의 부족
	김제	개발중단	공공+민간	-민자유치 저조	-민간개발업자의 부도
	상송	개발중단	공공+민간	-부지확보 미흡 -민자유치 저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업자의 조성허가 취소
제주	세화·송당	개발중단	민간	-민간유치저조 -계획의 타당성 미흡 -개발의지 부족	-사업자(조합원) 간의 내부 갈등 및 자금력 부족 -지역사회영향력 및 경제기여도 낮음 -관광지지정에서 승인까지 7년 이상 연기

주. 문화관광부 내부자료(2007), 문화관광부 연차보고서(2006)를 근간으로 연구자 재작성

또한 사업기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개발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이 16개소(66%), 20년 이상인 곳이 6개소(21%)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리산온천의 경우, 초기 설정된 목표연도에서 13년이나 연장되는 등 한국온천관광지의 개발기간이 매우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온천관광지 사업기간

구분	미착수	6~10년	10~20년	20년 이상	합계
강원	석교, 화천	-	강릉, 홍천, 영월	-	5
충북	능암, 제천	충은	돈산	-	4
충남	-	천안, 마곡	아산, 칠갑산도립	덕산	5
전북	정읍목욕리, 주립, 마이산회봉, 남원약수	김제, 상송	석정		7
전남	월출산	-	도곡	지리산, 화순	4
경북	-	풍기	도산, 문경, 예천, 탑산, 청도, 청도용암	백암, 경산, 문장대	10
경남	곡안, 옥수	-	마금산, 부곡	-	4
제주	-	세화·송당	-	-	1
합계	11	7	16	6	40

주. 문화관광부 연차보고서(2006),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보고서(2007)를 근간으로 연구자 재작성

라. 주요 시설

우리나라의 모든 온천관광지에서는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과 상가, 온천시설이 계획되었으며, 그 외 도입시설로는 연수시설 12개소, 골프관련 시설 10개소, 노인전문시설 9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방병원, 박물관, 야영장 등이 일부 도입되고 있으나, 온천수를 이용하는 온천시설 이외에는 타 관광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획일적인 시설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 및 온천자원이 갖는 매력성 및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온천관광지의 주변 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온천관광지가 수려한 자연 경관 및 관광자원과 인접·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일부 온천관광지의 경우 지역 활성화, 관광거점 개

발이라는 관광지 지정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주변의 자연경관, 문화자원을 찾는 방문객 수요에 따른 숙박 및 편의 시설지구로서 개발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마. 온천관광지 투자실적 및 이용자수

온천관광지의 투자실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천관광지 총 40개소 중 사업이 실제 추진되어 온천이용시설이 1개소 이상 존재하고 이용객수가 연간 10만명 이상인 온천관광지를 선정하여 최근 3년간(2003~2005)의 투자계획 및 실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석정, 지리산, 풍기는 2005년도의 이용자수가 미산정되어 2004년도의 이용자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40개소의 온천관광지 중 35%에 해당하는 14개소가 추출되었다.

먼저, 온천관광지 계획 투자비에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55,499백만 원으로 3.6%에 불과한 반면 민간투자부문이 1,494,093백만 원(96.4%)으로 민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자에 대한 비중은 우리나라 지정관광지 투자계획의 민간투자 비율인 86.8% 보다도 높은 수치로서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 온천관광지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아산 396,363백만 원, 석정 393,750백만 원, 마곡 215,566백만 원 순으로 높은 반면 계획 투자비가 낮은 온천지는 백암온천 448백만 원, 도곡 5,600백만 원 등으로 나타나 신규 및 개발 초·중기인 온천지에 비하여 개발 완료 또는 조성 말기의 투자비는 낮아 보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광지리모델링사업⁴⁾ 추진이 매우 저조하며,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의 정비 및 관광객의 선호 및 행태 변화에 따른 공간·시설 정비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4)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모델을 제시하고, 획일화된 관광지 조성·개발·이용행태 등을 지양하여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비·관리·운영·홍보 및 연계관광지 개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시설 및 경관 개선, 지역 관광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 개발을 강화하여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2005년도에는 강원도 영월의 '고씨동굴'과 2006년도에는 전라남도 영암의 '영산호'가 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온천관광지 개발실태 조사연구

표 5. 온천관광지 관광지 조성 계획상의 도입시설

시도	온천관광지명	조성 계획			주요자원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강원	홍천	관광호텔 등	농수산물직판장 등	위터파크, 스포츠센터 등	팔봉산, 해산골, 홍천강
	영월	관광호텔 등	상가	스포츠센터	온천보양원, 노인휴양촌, 수목원 등
	강릉	관광호텔 등	상가	골프연습장, 농구장 등	종합온천장
	화천	관광호텔 등	상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등	온천 보양원, 연수원 등
충북	충은	관광호텔 등	상가	미니골프장, 놀이시설 등	종합 온천장 등
	능암	관광호텔 등	상가	놀이시설	온천풀장, 자연학습장
	돈산	일반호텔	상가	놀이시설	수영장
충남	덕산	관광호텔 등	상가 등	모험 놀이시설, 스포츠 센터	공원, 청소년수련시설
	아산	관광호텔 등	상가	수영장, 썰매장	종합온천장
	칠갑산도립	호텔 등	상가		종합온천장
	천안	관광호텔 등	상가	종합엔터테인먼트시설	공원, 공연장
	마곡	관광호텔, 별장, 산장	상가	수영장	노인복지시설, 보양원 등
전북	마이산회봉	관광호텔 등	상가	스포츠센터	-
	석정	관광호텔 등	상가	골프연습장, 놀이시설	노인휴양촌, 요양원, 연수원 등
	김제	관광호텔 등	상가	놀이시설, 수영장	공원, 공연장
	상송	관광호텔 등	상가	테마파크	연수원
	남원약수	관광호텔 등	상가		공원
전남	마이산회봉	호텔, 유스호스텔 등	상가	골프연습장 등	온천장, 연수원, 노인휴양촌 등
	화순	호텔 등	상가	종합위락센터	종합 온천장, 연수원 등
	지리산	관광호텔 등	상가	골프장, 청소년레저스포츠시설	연수원, 오토캠핑장, 아카데미하우스, 한방종합병원
경북	도곡	호텔 등	상가		보호각
	백암	호텔, 국민호텔 등	상가		
	문장대	호텔 등	상가	간이골프장, 유희시설	관광농원, 야영장, 온천요양원, 민속촌, 온천종합관, 연수원
	경산	유스호스텔, 관광호텔 등	상가	운동 오락시설	청소년활동장, 피크닉장
	청도	관광호텔 등	상가		공원
	도산	관광호텔, 전통호텔 등	상가	종합유희시설, 체력단련장, 스포츠타운	한방진료센터, 연수원, 실버타운
	문경	관광호텔 등	상가	종합레포츠센터	종합온천장, 연수원, 보양공원
	담산	호텔 등	상가	민속씨름기념관, 골프 연습장	노인휴양시설, 종합온천장, 한방보양원 등
경남	용암	관광호텔 등	상가	골프연습장, 소싸움경기장, 눈썰매장	노인휴양원, 단체연수원, 소인국전시장 등
	예천	관광호텔	상가	기타 오락센터	
	풍기	호텔 등	상가	골프연습장	종합온천장, 수련원
	부곡	호텔 등	상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종합온천장, 수련원 등
제주	마금산	관광호텔 등	상가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등	온천장, 잔디광장 등
	세화봉당	특급호텔 등	농수산물 직판장 등	종합위락센터, 스포츠센터 등	종합온천장, 온천박물관 등

주.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보고서(2002),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보고서(2007) 및 일부 현장조사를 근간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6. 주요 온천관광지의 투자계획 및 실적 현황

시도	온천 관광지명	면적 (km ²)	온천이 용시설 (개소)	이용자수 (천명)	투자비(백만원)							
					계획(2003~05)				실적(2003~05)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14 개소	9,519	126	21,028	1,549,551	20,747	34,752	1,494,052	433,093 (27.94%)	13,921	29,194	389,978
충남	덕산	0.724	11	6,761	63,470	-	70	63,400	63,470 (100%)	-	70	63,400
	아산	0.844	30	1,188	396,363	-	-	396,363	220,1655 (5.54%)	-	-	220,165
	마곡	0.622	1	3,677	215,566	700	1,600	213,266	24,833 (11.51%)	300	1,300	23,233
전북	석정	1,534	3	165	393,750	-	850	392,900	850 (0.21%)	-	850	-
전남	화순	0.512	4	767	172,217	1,250	1,350	169,617	2,600 (1.50%)	1,250	1,350	-
	지리산	1.836	16	1,478	40,800	2,900	2,900	35,000	42,400 (103.92%)	2,900	3,900	35,600
	도곡	0.613	15	819	5,600	2,450	3,150	-	5,600 (100%)	2,450	3,150	-
경북	백암	0.157	10	1,058	448	224	224	-	-	-	-	-
	경산	0.262	1	123	18,791	-	-	18,791	-	-	-	-
	문정	0.400	3	555	66,100	-	-	66,100	14,259 (21.57%)	-	-	14,259
	탑산	0.136	2	137	20,660	2,280	2,280	16,100	4,423 (21.40%)	2,046	2,047	330
	용암	0.933	1	246	126,231	6,858	6,858	112,515	27,421 (21.72%)	890	2,540	23,991
	풍기	0.097	1	387	10,970	3,000	7,970	-	10,970 (100%)	3,000	7,970	-
경남	부곡	0.849	28	3,667	18,585	1,085	7,500	10,000	16,102 (86.63%)	1,085	6,017	9,000

주. 문화관광부 내부자료(2007),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보고서(2002),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보고서(2007) 및 일부 현장조사를 근간으로 연구자 재작성

반면, 15개 온천지의 투자실적은 계획 대비 약 30%인 484,171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어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재원별 계획 대비 투자실적에 대한 조사결과 국비 67%, 지방비 84%, 민간투자 26%로 나타나 특히 민간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실적의 저조는 타 지정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온천관광지 또한 민자투자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과 더불어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시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실적이 높은 온천지는 아산온천(220,165백만 원), 덕산온천(63,400백만 원) 순으로, 이는 민자투자 실적 순위와도 유사하게 나타나 민자투자실적이 전체투자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석정, 화순, 경산의 경우는 투자 실적이 전무하여 온천지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으며, 온천관광지 1개소 당 평균 관광객 수인 약 1,502천명을 상회하는 온천관광지는 덕산, 마곡, 부곡의 3개소로 조사되어 특정 온천관광지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온천관광지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한·일 온천법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한일간의 온천법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온천개발의 특성을 분석·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일본의 온천법을 대상으로 체계 및 주요 항목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표7 참조) 도출된 한국온천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온천법의 주요대상

한국의 경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보양온천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에 관련된 항목이 7항목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한국의 온천지 개발이 온천원보호지구라는 공간 지정과 지정된 공간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수행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주요 관리대상이 「泉源」, 즉 아직 땅속에 부존하고 있는 온천 그 자체이며, 기본적으로 지구 지정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온천지 정비

온천관광지 개발실태 조사연구

표 7. 한국과 일본의 온천법 비교

항목	한국	일본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환경청
법의 구성	-37조, 부칙 목적, 정의, 국가등의 책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보양온천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굴착허가, 원상회복의무, 동력장치설치의허가,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발견의 신고, 온천발견 신고수리의 제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출입검사, 온천협회 설립 등, 협회의 사업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시정요구, 청문, 수수료,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6장 39조, 부칙, 별표 총칙(목적,정의), 토지굴착의 허가, 허가의 유효기간, 공사의 완료 또는 폐지 신고, 허가의 취소, 원상회복명령, 재굴착 또는 동력장치 허가, 온천채취의 제한명령, 환경청장관의 협의 등, 기타목적의 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온천용출목적 이외의 토지굴착제한, 온천이용의 허가, 온천성분 등의 표시, 온천성분분석자 등록, 폐지신고, 등록말소, 등록분석기관등록부 관람, 등록분석기관 표시, 등록취소, 환경청령에의 위임, 온천성분분석 요구에 보고의무, 보고의무 및 현장검사, 지역의 지정, 개선지시, 허가의 취소 등, 심의회 또는 기타 합의제기관 자문, 청문의 특례, 보고의무, 현장검사, 시장의 사무권한, 벌칙
목적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	온천을 보호·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공공부리의 증진에 기여
정의	-온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 온천공이 있는 토지 소유자 -온천중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온천전문검사기관: 제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온천: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수, 광수 및 수증기 기타 가스(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하는 천연가스 제외)로, 별지에 기재된 온도 또는 물질을 보유 -온천원: 채취되지 않은 온천
허가취소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 제외)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온천이용허가 취소·제한 온천중사자 또는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 조치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영향을 미치고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법인의 경우 임원)가 벌금형에 처하거나 2년미만일 경우-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의 규정 또는 규정에 근거한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수질검사	1년 마다 수질 및 성분 검사 의무화 수질 및 성분검사는 온천협회에 위탁가능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시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의무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재검사 실시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 취소가능	필요시에는 용출량·온도·성분·이용현황과 함께 검사
게시내용	수질검사결과,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시설내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원천명, 온천의 천질, 이용시 온도, 성분, 성분분석시기, 등록분석기관은 온천에 물을 섞어서 사용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가온의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입욕제를 사용할 경우 명칭 및 소독방법과 이유,금기증, 음용 또는 욕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
관리자의 보고의무	없음	토지굴착자, 온천 채취자, 온천이용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용출량, 온도, 성분,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의무화 할 수 있음 -경제산업국장은 공업용 온천채취자, 온천이용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용출량, 온도, 성분,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의무화 할 수 있음
발견자 인센티브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토지 굴착 및 온천이용 허가를 우선적으로 허가, 온천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알선 등의 지원	없음

주. 한국 법제처(<http://www.moleg.go.kr>), 일본 법제처(<http://www.houko.com>)의 온천법을 근간으로 연구자 재작성

모델로서 「국민보양온천지5」, 「교류·휴양 온천지6」 등이 존재하나, 2006년 현재 전국 2431개소의 온천지중 약 4.5%인 110개소만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온천법」의 주요 대상이 한국의 온천법의 경우 온천과 그 주변 공간인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온천 및 온천수(泉水)로 나타나, 온천법의 주요 대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온천법의 주요목적

「온천법의 목적」 항목에서 한국 온천법은 ‘온천의 보호와 이용·개발과 함께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온천에 대한 보호·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온천발견자에 대하여 개발을 위한 허가 및 비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오히려 채취자에 대한 제한 항목이 나타났다. 즉, 한국의 온천법은 온천을 활용하여 양호한 온천지 개발 및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泉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온천법 제정시기의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성이 높다 하겠다. 한국의 온천법이 제정된 1981년은 관광기본법을 비롯하여 관광에 관한 제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관광과 리조트의 진흥·정비가 국책으로서 적극 추진된 시기였다. 한편, 일본의 온천법이 제정되었던 1948년은 전후 일본이 재건되던 시대로 관광관련제도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오히려 온천 난개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였다

다. 온천의 정의

「정의」 항목에서 한국은 온천의 정의를 온천, 온천 우선이용권자, 온천종사자, 온천전문검사기관 등으로 온천과 온천개발 관련자를 포괄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온천과 온천원에 국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온천에 대하여 ‘지하에서 용출’과 ‘25도 이상’이라는 온도 규정과 함께 성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5) 국민보양온천지는 온천의 공공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온천법에 의거하여 구 환경청이 지정한 지역으로 지정요건은 (1) 온천의 효능이 현저 (2) 용출량이 풍부 (3) 부근 일대의 경관이 뛰어난 것 (4) 환경위생적 조건이 양호 (5)고문의(醫)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요양, 보양, 휴양에 적합한 건전한 온천지이다.

6) 교류·휴양온천지는 위의 국민보양온천지 중 특히 자연과의 교류와 자연교육활동의 거점으로서 적합한 온천지를 지정하는 제도로 2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온천법에서는 온천성분 등의 표시, 온천성분 분석자 등록, 온천성분 분석 요구에 대한 보고 의무, 보고의무 및 현장검사 등의 성분관련 항목이 6개 항목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효능에 관한 금기 및 입욕, 음용상의 주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의 이러한 성분에 대한 강조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부터 효능으로 온천서열을 정하는 등 일본의 온천은 요양·보건 기능이 중시되고 의료에도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2004년 7월 나가노현 공동노천탕과 료칸(旅館)에서의 입욕제 첨가가 발각되어 사회문제화되면서 온천성분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즉, 일본의 경우 온천을 원천(泉源)과 성분을 온천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온천공과 온천지 개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국민관광행태 변화와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 정비 등을 목적으로 온천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온천관광지개발은 지역개발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온천관광지의 개발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온천관광지 개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천관광지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천법 분석과 개발 현황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한국 온천관광지 개발 실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온천관광지 개발 및 관리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온천지개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찰되었다.

먼저, 한국의 온천지 개발은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에서의 개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온천지의 개발은 관광·리조트 공간으로서의 체재·숙박지점형 온천지와 도시 근교의 당일여행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로서의 온천지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정비의 방향성 및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온천개발은 부존자원의 보호·이용적 측면보다는 관광·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개발적 성격이 강하며, 특히 온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등에 의하여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 개발·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적 공간 정비는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성의 반영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원의 특성 및 지역의 역사·문화와 공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완료 및 개발시기가 장기화된 온천관광지의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지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고찰되었다.

셋째, 한국의 온천관광지 개발은 민자유치의 어려움,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온천관광지 40개소 중 15개소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곳은 3개소에 불과하고 일부 온천관광지로 이용객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 실적이 부진한 온천관광지에 대한 지정해제를 추진하여 추진 실적이 우수한 온천관광지의 리모델링, 마케팅 추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신규 온천관광지 지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역량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넷째,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 계획 등 하드웨어시설 위주로 작성되어 재원조달계획, 시설프로그램계획,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성계획 승인가격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현재 관광개발수립 시 기술용역을 맡은 계획가들의 대부분이 도시계획, 조경설계, 건축·토목 설계 분야의 전문가임을 감안할 때, 동일분야에서의 관광활동 및 관광지 특성 등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진작하기 위한 관광계획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한국의 온천관광지 개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온천지의 제도 및 지정 및 조성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의 온천개발이 공간개발 지향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온천관광지의 개발실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에 대한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권순조, 1996, 온천관광지 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김동균, 1992, 우리나라 온천지구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 김상훈, 1985, 한국온천관광지의 형성과정과 기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김재근, 1998, 효율적인 온천관광지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김충기, 1994, 한국온천지개발에 관한 연구 - 관련 법규 및 개발절차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나병조, 2004, 한국의 온천관광지 개발에 관한 연구 - 강릉석교온천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류홍선, 2001, 우리나라 온천관광지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문화관광부, 2003,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9. 문화관광부, 2005, 관광지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
10.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89-397
11. 서수원, 2003, 강원지역 온천관광지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 설악·금강산지역 온천관광지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한국관광공사, 2006, 국민여행실태조사, 55-151
13. 현훈, 1993, 온천관광지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温泉法研究会, 2000, 温泉法, 3-79
15. 金炫, 1997, 韓国と日本における温泉地の景観評価に関する比較研究, 東京大学博士学位論文
16. 일본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houko.com>
17. 한국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접수일 : 2007년 3월 2일

■ 3인 익명 심사필